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43 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김현정 · 모경종 · 민병덕

민형배 • 박상혁 • 이광희

이상식 • 정성호 • 정준호

한정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17조의4제2항, 제17조의6제2항).

법률 제 호
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의4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제17조의6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의4(자본금 등) ① (생	제17조의4(자본금 등) ① (현행과
략)	같음)
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	②
말 <u>대차대조표</u> 의 자산총액에서	<u>재무상태표</u>
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	
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	
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	
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	
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(增	
資)하여야 한다.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17조의6(다른 법인에 대한 출	제17조의6(다른 법인에 대한 출
자의 제한 등) ① (생 략)	자의 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
	<u>ㅇ</u>)
② 제1항에서 "자기자본"이란	②
직전 사업연도 말 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</u>
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(제1	<u> </u>
7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	
준비금은 제외한다)을 뺀 금액	
을 말한다.	<u>.</u>